

##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

청 구 인 ○ ○ (전화 )

주민등록번호

주소

사건본인과의 관계

사건본인 ○ ○ ○

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
주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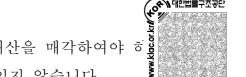
등록기준지(국적)

## 청 구 취 지

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○○○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. 00. 00. ○○법원 2013느단000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과 ○○○(현재주소 )가 선임되었습니다.
- 2. 가정법원에서는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 과 ○○○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.



- 3. 그런데,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재산을 매각하여야 ㅎ \$\frac{b}{b}\frac{b}{b}\frac{b}{b}\frac{b}{b}\frac{b}{b}}\$
- 4.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## 첨 부 서 류

1.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사건본인) 각 1통

2. 주민등록등본 (사건본인) 1통

3.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) 1통

4. 기타(소명자료) ○통

2000년 0월 0일

위 청구인 ○ ○ ○ (인)

| (0   | <b>수 1</b> 대한법률구조공단 |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4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
| :o:k |                     |  |

| 제출법원         | 사건본인(피후견인이 될 사람)의 주소지의 가정법원(지방법원, 지장   |
|--------------|--|
| 청구권자         | · 피한정후견인, 한정후견인,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(민법 제 949조의2제3항, 제959조의6)   |
| 제출부수         | 신청서 1부 관련법규 <mark>민법 제949조의2제3항, 제959조의</mark> 6   |
| 불복절차<br>및 기간 | • 불복절차 없음  |
| 비 용          | ・인지액 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<br>・송달료 : 청구인 수×3,700원(우편료)×10회분  |
| 요 건          | 여러 명의 한정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 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(민법 제949조의2제3항, 제959조의6) |